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 309 회 임시회

-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설 명 서



2025. 2.

박 왕 규 의원

제안 설명서

제안자: 박왕규 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경비원뿐만이 아니라 범위를 확대하여 미화원, 관리사무소 직원 등을 포함하고 이들의 권리 증진과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 제1조에서 제7조까지의 제명 및 본문 중 경비원을 경비원 등 근로자로 범위를 확대 변경하였으며,
- 안 제2조에서는 경비원 등 근로자와 입주자 등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 **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조치 사항으로는,**

-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2025년 1월 23일부터 2월 4일까지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등에 입법예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왕규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00925003
----------	----------

발의연월일: 2025. 2. .
발 의 자: 박왕규 서보영 고명욱
도하석 김장관 강한곤
이진환

1. 제안이유

- 공동주택 경비원뿐만이 아니라 범위를 확대하여 미화원, 관리사무소 직원 등을 포함하고 이들의 권리 증진과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 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 및 경비원 등 근로자 범위 확대(안 제1조 ~ 제7조)
- 나. 경비원 등 근로자 및 입주자 등 정의 규정(안 제2조)

3. 일부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 나. 비용추계서 : 비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를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경비원”을 “경비원 등 근로자”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경비원”이란”을 ““경비원 등 근로자”란”으로, “경비 업무”를 “경비·청소·관리 업무”로, “사람”을 “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소 직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경비용역업체로서 경비원”을 “경비·청소용역업체로서 경비원 등 근로자”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경비원”을 “경비원 등 근로자”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경비원”을 “경비원 등 근로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비원”을 “경비원 등 근로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경비원”을 “경비원 등 근로자”로 한다.

제4조의 제목 “(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를 “(경비원 등 근로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경비원은”을

“경비원 등 근로자는”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비원”을 “경비원 등 근로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경비원을”을 “경비원 등 근로자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경비원이”를 “경비원 등 근로자가”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경비원”을 “경비원 등 근로자”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경비원”을 각각 “경비원 등 근로자”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경비원을”을 “경비원 등 근로자를”로, “경비원 차별금지”를 “경비원 등 근로자 차별금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u>경비원</u>에 대한 폭행, 폭언 등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 등의 예방에 관한 달서구의 역할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u>경비원의 인권</u>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 략) 2. “<u>경비원</u>”이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u>경비 업무</u>에 종사하는 <u>사람</u>을 말한다. 	<p><u>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 <u>경비원 등 근로자</u>----- ----- ----- ----- <u>경비원 등 근로자</u>----- ----- -----.</p> <p>제2조(정의)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u>경비원 등 근로자</u>”란 ----- ----- <u>경비·청소·관리 업무</u>----- ----- <u>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소 직원 등</u>-----.

3. “입주자 등”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탁관리업체 및 경비용역업체로서 경비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생략)

5. “기본시설”이란 경비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경비원의 근무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경비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

3. -----

----- 경비·청소용역업체로서 경비원 등 근로자-----
-----.

4. (현행과 같음)

5. ----- 경비원 등 근로자-----

-----.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

----- 경비원 등 근로자-----

-----.

② ----- 경비원 등 근로자-----
----- 경비원 등 근로자-----
-----.

③ ----- 경비원 등 근로자-----

를 비롯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4조(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
의 책무) ① 경비원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
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
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
무할 권리를 가진다.

② (생략)

제5조(지원의 범위) 구청장은 경
비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
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비원을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고자 입주자대표회의에
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적 지원

2. 경비원이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률지원 연계

3. (생략)

4. 그 밖에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및 지원제한) ①

-----.

제4조(경비원 등 근로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① 경비원
등 근로자는 -----

-----.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지원의 범위) ----- 경비
원 등 근로자-----

-----.

1. 경비원 등 근로자를 -----

2. 경비원 등 근로자가 -----

3. (현행과 같음)

4. ----- 경비원 등 근로자-----

제6조(실태조사 및 지원제한) ①

구청장은 경비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현황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구청장은 경비원에게 폭언, 폭행 또는 인권침해 등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공동주택에는 구에서 실시하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단, 구청장은 입주자등에게 소명을 요구할 수 있고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이행하거나 예방적 조치를 취한 공동주택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경비원을 포함하여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경비원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생략)

----- 경비원 등 근로자-----

-----.

② (현행과 같음)

③ ----- 경비원 등 근로자-----

-----.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① ---
--- 경비원 등 근로자를 ---
----- 경비원 등 근로자 차별금지-----

-----.

② (현행과 같음)

【 관계 법령 】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 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 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 다.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
5.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말한다.
6. “사용자”란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 등을 말한다.
7. “입주자등”이란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8. “입주자대표회의”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를 말한다.

제65조의2(경비원 등 근로자의 업무 등) ① 공동주택에 경비원을 배치한 경비업자(「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비업자를 말한다)는 「경비업법」 제7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행위
2.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행위

④ 경비원 등 근로자는 입주자등에게 수준 높은 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